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사전공고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2월 22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추진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제27조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운영고시”)
- (사업내용)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사업규모) 총 1,275억 (국고보조금 기준)
- (사업기간) 연내 집행 원칙(연례적 이월 및 사업취소 최소화)
 - 사업규모, 대수선으로 인한 인허가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라 최대 3년('26. 12. 31.)까지 이월가능

2. 지원자격

- “운영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하 “사업대상기관”)
 - * 국가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제외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3. 지원대상

- “공공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아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2014년 1월 1일 이전)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이하 “보건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이하 “의료시설”)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이하 “경로당”)

4. 지원내용

- (지원항목) 에너지공사 항목(필수항목 중 건축공사 최소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 적용), 부대공사 및 기타항목 등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공사비 지원

구분		기술요소	
에너지공사	필수공사	건축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 및 문
		기계, 전기 등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기타	Cool Roof(차열도료), 선도기술(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선택공사	조경공사,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절수형 기기, 환경성선언 제품(EPD) 마감재(벽지, 천장재, 바닥재)	

단, 위 항목 외 선도적인 신기술 등 그린리모델링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 추가지원 가능
 * 부대공사, 기타항목 및 기술요소 세부기준은 가이드라인 [참고1] 참조

- (지원한도) 사업대상의 규모 및 신청주체에 따라 보조율 차등적용
 - 사업대상 당 국비지원 한도는 최대 70억(서울, 중앙·공공의 경우 50억)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기관에서 초과 금액 부담 가능
 - 섬 지역* 및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300㎡ 미만), 시그니처사업**의 경우,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추가지원(세부기준은 가이드라인 p.5참조)
 - * 「섬 발전촉진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포함
 - ** 선도적 녹색기술적용 및 홍보효과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별 대표사업 선정
- (지원방식) 서울특별시, 중앙·공공기관은 지원 한도 내 해당 사업비의 50%,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70% 지원

5.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신청방법)
 - 희망건축물 : 일반사업 및 시그니처 사업을 구분하여 전자공문으로 접수(수신처 국토안전관리원, '23. 12. 8. ~ 12. 27)
 - 본 사업*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별도 공고예정
 - * 공사 전 '24년 종합사업지원(현장조사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한 건축물에 한하여 본 사업공모 신청 가능

- (선정절차) 희망건축물 접수 → 사업공고 →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 시행 → 본 사업 공모 → 사업 신청 → 대상선정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1차 80%, 2차 20% 분할) → 사업추진

단계	주관 기관	주요 내용	일 정
희망 건축물 접수	사업 대상 기관	· 본사업 공모 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검토 등 사업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공사 전 종합 사업지원 대상 모집 · (중앙·공공) 첨부 서식을 참조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전자문서 신청 · (기초지자체) 첨부 서식을 참조하여 기초지자체의 신청 취합 후 광역시·도에서 신청승인	'23.12.8(금) ~ 12.27(수)
사업 공고	GR 창조센터	· '24년도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공고 (사업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24. 2월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	GR 창조센터	·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 대상 공사 전 종합 사업지원 (현장조사 및 에너지절감효과 분석 등)	'24. 3 ~5월
본사업 공모	GR 창조센터, 종합사업지원 기관	· '24년도 그린리모델링 본사업 공모 (신청기간, 신청절차 등) · 종합사업지원 컨설팅 보고서 시스템 입력 (공사 개요, 공사요소, 공사비 등)	'24. 5월
사업 신청	사업 대상 기관	· 컨설팅 보고서를 활용하여, 공사항목 및 사업비, 지방비 매칭 등 검토 후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서 등 관련양식 작성 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신청절차는 희망건축물 접수와 동일)	'24. 5 ~6월
대상 선정	심의 위원회, GR 창조센터	· 가이드라인 배점표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예비순위* 선정 * 사업취소 등 발생 시 선정된 예비순위에 따라 대상 추가 선정 · 대상선정 결과 사업대상기관 알림	'24. 6월
보조금 신청	사업 대상 기관	· 대상확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서 작성 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 e나라도움 : https://www.gosims.go.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24. 6월
보조금 교부	GR 창조센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확인 후 보조금 교부*(1,2차 분할) * 교부절차 : 국토교통부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대상기관 또는 (광역시·도→기초지자체) **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추가 교부금 지급	'24. 6월

* 그린리모델링센터 홈페이지 : <https://www.greenremodeling.or.kr>, * 추진일정은 향후 변경 가능

6. 문의사항 및 세부사항 : 가이드라인 참고

- (문의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연락처 : ☎ 055-771-4987, 4970
- E-MAIL : greenremodeling@kalis.or.kr

【붙임】

1.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가이드라인 1부. 끝.